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채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 이하로 한다. <u>다만, 주식에의 투자는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관련파생상품(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기준)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이하로 한다.</u></p> <p>3.~9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채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 이하로 한다.</u></p> <p>3.~9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0. 주식, 집합투자증권등,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이하로 한다. 단,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은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.</u></p>
<p><신설></p>	<p><u>부칙</u>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2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